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1 - 57 - 209호(사건번호 : 202106조사077)

안 건 명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1. 12. 22.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배경

1.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된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21.6.23~8.31)를 실시하였다.

나. 행위 사실

2.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실시한 사실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거부한 행위를 하였다.

※ 조사관 2명은 '21.8.5 15:20경 (주)에스원솔루션 영업장에 조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 및 사실조사 문서를 제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장 관계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나가줄 것만을 요청하여 조사관은 피심인에게 조사거부 행위임을 고지하고 같은날 15:50경 퇴실함

2. 처분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처분 규정

3.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은 (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ii) 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의 판매점 출입과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사실조사)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준금액

6.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500	3,000	5,000
		대규모유통업자	5,000		

나. 최종 과태료

7.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8. 상기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9.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현



위 원 안 형 환



위 원 김 효 재



위 원 김 창 룡

